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63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임규영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3,817㎡ 중 331/3,817 지분에 관하여 2021. 8.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여주시 C 임야 3,817㎡ 중 331/3,8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8. 31. 접수 제293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0. 5. 28. B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한 2020. 5. 28.부터 2025. 5.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1. 9. 29.경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5. 19. D은행에게 9,782,2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차전83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2. ‘B은 원고에게 10,214,044원 및 그 중 9,523,4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B은 2021. 8. 30.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여주시 C 임야 3,817㎡ 중 331/3,8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93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로하여 주었다.

피고는 ‘피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2021. 8.경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았다. B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2022. 11. 4. 기준으로 162,304,154원이나, 피고는 일부 청구로 그 중 1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5631호로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11. ‘B은 피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E에 대한 32,831,000원 상당의 대출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양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1개월 만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B이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아울러 B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즉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